

2026 전문무역상사 수출촉진 지원사업 관련 FAQ

Q) 전문무역상사 수출촉진 지원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?

- 수출 물류실행,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사 선정 등 모든 진행을 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한 후, 제작 완료시 지원금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선정된 100개사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며 검토 후 최대 250만원(할랄인증 보유시 300만원)의 지원금을 정산 예정입니다.

<신청 관련>

1. 신청한 모든 기업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?

- 본 사업은 전문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
1)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2)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주신 기업 중
3)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한 후 100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250만원(할랄社 300만원)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2. 신청시 아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?

□ (지원비 신청서류) *10월 제출 증빙서류 (선정기업 대상)

(1) 수출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

- ① 운송비 인보이스 (or 청구서)
- ② 운송 증빙 [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운송장(Airway Bill) 등]
- ③ 수출신고필증 [수출자구분 B,C,D 中 1개로 기재]
- ④ (전자)세금계산서 *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[운송사 발행]
- ⑤ 운송비 지급 증빙 [이체 확인서, 카드결제 영수증 등]
- ⑥ 계좌사본 [법인 또는 회사명의 필수] *사업비 환급용 계좌
-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

(2)-(7) 기타 수출촉진 프로그램

- ① 지출 증빙자료 ((전자)세금계산서, (전자)계산서, 카드결제 전표 등)
- ② 견적서 (세부 견적 내역 포함)
- ③ 은행에서 발급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은행 홈페이지 발급 영수증
※ 제작사 발급 현금입금증 등은 불인정
※ 해외 송금 시, 외국인 거래 영수증, 외화송금발신 전문 첨부
- ④ 제작이 완료된 결과물 또는 인증결과물 사본 (pdf, jpg 파일 등)
- 동영상 및 카탈로그, 홈페이지 주소 및 화면 캡처본, 바이어 DB 구축 증빙, 이마켓 플레이스 사용 증빙, 무역 실무강좌 수강 증빙
- 해외규격인증의 경우, 인증서, 시험성적서, 심사보고서*, 기술컨설팅 보고서(붙임5) 등
* 심사 관련 전체 결과보고서 첨부(원본의 불임자료, 발제본 불인정)
- ⑤ 계좌사본 [법인 또는 회사명의 필수] *사업비 환급용 계좌
-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

- **아닙니다.** 위 자료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100개사들을 대상으로 11.2(월)~12.4(금)에 수출촉진 활동 증빙 서류로 증빙예정입니다.

○ **사업 신청시 제출 자료 안내 (pdf)**

- ① 물류비 신청 기업 중 지정요건 1~2 해당 : [붙임2] & [붙임 6]
- ① 물류비 신청 기업 중 지정요건 3~6 해당 : [붙임2] & 지정요건 해당 증빙 서류 자체 준비
- ②~⑨ 그외 수출촉진 중 지정요건 1~2 해당 : [붙임3] & [붙임 6]
- ②~⑨ 그외 수출촉진 중 지정요건 3~6 해당 : [붙임3] & 지정요건 해당 증빙 서류 자체 준비

*단, [붙임6] 수출실적 제공동의서 제출시 (1)법인인감증명서 사본과 (2)사업자등록증 사본 함께 필수적으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.

3. 전문무역상사 지정시 신청한 '지정유형'을 모르겠습니다.

- 지정유형은 아래의 7가지 중 한 가지이며 신청시 기업의 지정요건을 모르실 경우,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. (02-6000-5576, 카카오톡 채널 「전문무역상사 사무국」)

지정유형*	유형별 평가기준 (60점)	공통평가기준 (40점)	총점 (100점)
유형 ①	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 (30점) + 최근 3년간 연평균 대항수출비중 (30점)	전문무역상사 지정기간(20점) + 사업적합성(20점)	100점 만점
유형 ②	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(60점)		
유형 ③	전년도 매출액 (40점) + 해외 대규모 점포 수 (20점)		
유형 ④	전년도 국외 매출액·거래액 (60점)		
유형 ⑤	최근 2년간 해외정부/국제기구 직접조달 실적 (60점)		
유형 ⑥	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 (60점)		
유형 ⑦	전문무역상사 지정기간 (50점) + 사업적합성 (50점)		

<유형 안내>

- ①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이 1백만 달러 이상 & 타 중소·중견기업 제품 수출비중이 20% 이상
- ② 전년도 혹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1억 달러 이상
- ③ 해외 대규모 점포 수가 3개 이상이고, 전년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
- ④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운영, 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100만 달러 이상
- ⑤ 최근 2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직접조달 실적 100만 달러 이상
- ⑥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 100만 달러 이상
- ⑦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

4. ①~⑨ 수출촉진 프로그램 중 한가지만 신청가능한가요 ?

- 네. 기업당 한가지만 신청가능합니다.

5. 신청시 선택한 프로그램(①물류비 지원)과 선정 이후 증빙을 위한 프로그램(③외국어 홈페이지 제작)이 상이해도 되나요?

- 아니요. 지원대상 선정시 신청해주신 프로그램과 이후 증빙을 위한 프로그램은 동일해야 하며 (①물류비로 신청시 ①물류비로 증빙) 변동시 지원금 수령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.

6. [붙임2]와 [붙임3]의 2페이지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의 성명과 서명은 꼭 대표자여야 하나요 ?

- 아니요. 수출촉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정보로 기입 바랍니다.

7. 법인인감을 필수적으로 찍어야 하나요?

-법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분이어야 하나요 ?

- [붙임2/3의 부정수급 적발시 환수 동의서]와 [붙임6 수출실적 제공동의서]는 꼭 법인인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.
- 법인인감증명서는 모집시작일(2026.08.27.)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(2026.05.27.)분을 유효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<선정 관련>

7.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?

- 2026년 9월 25일(금) 발표 예정이며, 신청서상 기재해주신 담당자님 이메일로 결과가 송부될 예정입니다. (*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)
-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게도 결과 안내 메일 송부 예정입니다.

8.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유형에 따라 유형별 평가기준(60점) 및 공통평가 기준(40점)으로 평가합니다.

지정유형*	유형별 평가기준 (60점)	공통평가기준 (40점)	총점 (100점)
유형 ①	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 (30점) + 최근 3년간 연평균 대항수출비중 (30점)	전문무역상사 지정기간(20점) + 사업적합성(20점)	100점 만점
유형 ②	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(60점)		
유형 ③	전년도 매출액 (40점) + 해외 대규모 점포 수 (20점)		
유형 ④	전년도 국외 매출액·거래액 (60점)		
유형 ⑤	최근 2년간 해외정부/국제기구 직접조달 실적 (60점)		
유형 ⑥	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 (60점)		
유형 ⑦	전문무역상사 지정기간 (50점) + 사업적합성 (50점)		

<유형 안내>

- ①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이 1백만 달러 이상 & 타 중소·중견기업 제품 수출비중이 20% 이상
- ② 전년도 혹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1억 달러 이상
- ③ 해외 대규모 점포 수가 3개 이상이고, 전년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
- ④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운영, 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100만 달러 이상
- ⑤ 최근 2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직접조달 실적 100만 달러 이상
- ⑥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 100만 달러 이상
- ⑦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

<지원 프로그램 관련>

9. 해외마케팅 카탈로그, CD-ROM 등을 영어, 중국어로 각각 제작해도 될까요 ?

- 영어, 중국어, 일어 등 각각의 언어로 제작해도 되며, 사업 결과물 제출 시 모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.

⑦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프로그램

10. 인증 결과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?

- 결과물은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성적서 및 심사보고서, 인증서(등록증) 등이 포함되며, 지원기간(2026년 1월 ~ 2026년 11월) 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.

11. 해외규격인증 사후관리, 갱신, 연회비 등 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.

- 사후관리, 갱신, 연회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만, 해당 인증 결과물(성적서, 심사보고서, 인증서 등 증빙서류)을 제출해야 합니다.
연회비의 경우, 인증 취득 후 유지를 위해 매년 인증기관에서 부과하는 비용으로 인증기관의 인보이스, 송금확인증 및 기타 증빙서류(인증이 유지/연장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2. 인증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?

- 인증·시험·심사비는 실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실제 비용이란, 제출한 결과물(성적서, 심사보고서, 인증서)을 발행한 기관에서 청구한 비용으로, 해당 기관의 인보이스(견적서)와 비용증빙서류(송금확인증, 세금계산서)를 근거로 인정합니다.
대행, 위탁 등을 거치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인정이 불가합니다.

<선정 이후 증빙 관련>

13. 지원기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. 10월 20일부터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일까요 ?

- [붙임1.안내자료] 에 자세히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14. 은행창구 발급용 입금증 대신 인터넷뱅킹 출력 영수증으로 가능하나요?

- 가능합니다. 단, 제작사 발급 현금입금증 등은 불인정 됩니다.

15. ③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으로 신청하였고 선정되었습니다. 11월 30일까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? 정산 가능한가요 ?

- 활동 증빙 제출 기한인 **11월 30일(일)까지 제작이 완료**되고 제작이 완료된 결과물을 제출해주셔야 정산 가능합니다.

<정산 관련>

16.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도 함께 정산이 되나요?

- 아니요.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전액 기업 자부담이며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. (붙임 1. 필독)

17. 2025년에 발생한 물류비나 기타 수출촉진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?

- 아니요. **2026년 1월 ~ 2026년 10월 내에 발생한 비용**을 지원합니다.

18. 지원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.

-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80%를 지원해 주며, 그 금액이 업체당 총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합니다.

예시 1)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,000,000 원 * 80% = 3,200,000원
지원금 교부액 : 2,500,000원

예시 2)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,000,000 원 * 80% = 1,600,000원
지원금 교부액 : 1,600,000원

예시 3) 세금계산서 ① 공급가액 2,000,000원 * 80% = 1,600,000원(㉠)
세금계산서 ② 공급가액 3,000,000원 * 80% = 2,400,000원(㉡)
* ㉠ + ㉡ = 4,000,000원으로 업체당 한도 2,500,000원 초과
지원금 교부액 : 2,500,000원

19. ②외국어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, ③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이미 해버려서 시행업체가 수행기관 리스트 내에 있지 않습니다.
또는 ⑦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업체가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.
지원금 수령 가능할까요 ?

- **불가능 합니다.**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
②&③은「정부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」에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
⑦은 「정부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」에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
「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」에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시행하고,
해당 업체에서 발급한 증빙에 한정하여 예외는 없습니다.
- 수행기관 확인방법 : www.exportvoucher.com → 수행기관 → 수행기관 리스트 조회
 - 컨설팅기관 확인방법 : www.smes.go.kr/globalcerti → 컨설팅기관 → 컨설팅기관 검색

20. 개인 계좌로 지원금 정산 가능할까요?

- 불가능합니다. 법인 또는 회사명의로 통장사본을 제출 바랍니다.